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5-15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을 명하기 전, 의견제출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전 의견 제출 통지

1.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프레스아리랑 (PressArirang)	215N Marengo Ave Pasadena, CA 91101 USA

2.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성명(명칭)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법적 근거
프레스아리랑 (PressArirang)	프레스아리랑 홈페이지(pressarirang.org) 내 게시되어 있는 14개의 게시글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임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해당 게시물 삭제) 명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해당 게시글(URL)은 불법정보로 공개 부적합하여 게재하지 않으니, 담당자에게 별도 확인 필요

3. 의견제출

- 의견 제출 기한: 2025.6.20.(금)까지(공고일로부터 14일, 의견제출 기간 10일 이상 고려)
- 제출처: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담당: 유정민 주무관(전화: 02-2110-1566, 팩스: 02-2110-0140, jmevegy1013@korea.kr)

4.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